

장애인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방북 마무리 기자회견문

평양 대동강 외교클럽
2017년 5월 8일

언론인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장애인 권리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으로 첫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식 방문을 마무리합니다. 2017년 5월 3일부터 8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독립전문가로서, 활동 내용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며, 전세계 장애인 권리 이행 성과, 기회, 난관을 살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대화와 협력의 정신에 의거하여 금번 방문 요청을 수용해 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국가 방문은 장애인 권리 향유 실태, 개선 가능 분야, 당면 과제와 필요를 파악하는 목적입니다. 더불어 금번 국가 방문 준비와 방문 기간 동안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담당 기관으로 국가 방문을 조율하고 방문 동안 동행한 조선장애자보호련맹에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을 포함하여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장애인 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번 국가 방문 조율에 도움을 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 유엔개발계획대표 및 대표부에도 감사드립니다.

평양에서 외무성 인권 대사, 외무성 인권 및 인도주의 담당 국장, 보건장, 교육위원회 국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 국장,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위원장 등 고위급 정부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또한 조선통인협회, 조선맹인협회, 유엔 컨트리팀, 외교계 인사, 개발 기구, 국제 협력 이해관계자 및 장애인 당사자 분들을 만났습니다.

평양에서는 옥류아동병원, 문수회복원,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과학기술진당 및 장애자열람실, 평양초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또한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경기 폐회식에 참석하고, 조선장애자예술협회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황해남도 봉천에서, 도인민위원회 관계자를 만나고, 맹학교를 참관했습니다. 내일은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장애자원아련맹¹ 대표자와 만날 예정입니다.

독립전문가 위임권한과 관련하여 요청한 면담과 방문이 대부분 수용되었습니다만, 중앙재판소, 노동성, 도시경영성, 국가건설감독성, 중앙통계국과의 면담, 정신보건시설 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저의 예비 소견 및 권고 사항을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2018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 37차 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예비 소견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조치 및 저에게 제기된 사안 일부를 다뤘습니다.

사법 및 정책 프레임워크

¹국가 기관명이나 법령명이 국문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영문명을 아래 각주로 달았습니다.

² Korean Foundation for the Disabled and Orphan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당사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7년 8월 2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1997년 8월 23일을 기준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탈퇴 조항이 없기에, 유엔 사무국은 1997년 9월 23일 비망록(aide-mémoire)을 정부에 전달하여 탈퇴 통보로 야기되는 법적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비망록에 상세히 기술하였듯이 사무총장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당사국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탈퇴 통보 문서와 비망록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및 아동의 매매에 관한 선택의정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당사국 모두에 회람하였습니다.(C.N.467.1997.TREATIES-10, 1997년 11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이하 “장애인권리협약”)과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을 비준하였습니다. 이를 환영하며,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직 당사국이 아닌 여타 국제 인권 협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을 독려합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거부 결정을 재고하길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해 아동권리위원회에 제 5차 국가보고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 2,3,4차 국가보고서를 통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에서 장애인 권리를 다루었기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제 4차 보고서 기한을 넘겼습니다. 당국이 해당 보고서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고, 보고서에 장애인 관련 정보를 포함하길 독려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4년 제 2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받았고, 장애 관련 권고를 포함하여 권고 사항의 3분의 2 가량을 수용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장애인 인권 실현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인지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 간 해당국 정부는 자국 내 장애인 삶을 상당히 개선하는 데 기여할만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2013년 장애자보호법을 개정·채택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 장애의 정의를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조정했고, 장애인 보호를 목적으로 중앙 조율 메커니즘(central coordination mechanism)을 마련하고, 장애인 관련 데이터 수집하고,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 인프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또한 장애인 관련 조항을 담은 아동권리보장법, 인민보건법, 사회주의로동법, 재난 방지, 구조 및 복구법³ 등 일반 법규를 채택하거나 수정하여 아동, 여성 및 장애인에게 구호품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취업 규정⁴, 맹인 및聋인을 위한 학교 규정⁵, 사회 보험 및 사회 보장 규정⁶ 등 세부 이행 규정을 채택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 4조에 의거하여 법 조화를 완성하려면 입법 관계 당국이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지칭할 때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여러 법규에서 “멍어리(dumb)”라는 용어를 범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완전하게 누리도록 하는 사안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법 조항은 온전하게 법적 능력을 누리도록 하는 장애인권리협약 제 12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니다. 이에 우려를 표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과 오 개월 전에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따라서 이행 초기 단계로 봐야 합니다. 중앙 및 도, 구역, 군 단위 국가 기관 전반에 걸쳐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 관련 국내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서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 정부 내에서 장애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려고 노력했으며, 장애인권리협약 제 33조 1항에 따라 기술적 담당 부서로 역할했습니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내각 산하 기관으로 장애인 보호 정책 이행 방향을 제시합니다.

³ Law on Disaster Prevention, Rescue and Recovery

⁴ Regulations on Job Placement

⁵ Regulations on Schools for the Blind and the Deaf

⁶ Regulations on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정책적으로 장애인 보호를 추진하고자 향후 십 년을 내다보고 전략적 국가 기본 계획(Strategic National Action Plan)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시에 우선 순위 분야 세부 전략도 마련 중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환영합니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기한에 따른 목표치와 예산을 포함하여 전략적 국가 기본 계획을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제출 및 승인을 받도록 촉구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촉구하는 바, 장애 관련 조항 및 정책을 기관 내에서 주류화하는 임무를 맡은 관계 부처 간 조율을 우선적으로 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고 중앙 및 도, 구역, 군 단위 이행을 살피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2016년 내각 내 장애자보호중앙위원회⁷ 설치를 환영합니다. 장애자보호중앙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제 33조 1항에 따른 국가 차원 조율을 담당하게 됩니다. 부총리가 장애자보호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고 교육위원회, 노동성, 보건성 및 기타 부처,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참여하며, 더불어 조선통인협회와 조선맹인협회 대표자도 참여합니다. 도시관리성⁸과 국가건설감독성도 중앙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나 자유의 박탈 관련 정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인민보안성이 앞으로 장애자보호중앙위원회에 일원으로 참여하여 사법 접근성 및 자유의 박탈과 관련하여 장애 요소를 고려토록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별도 메커니즘을 지정하거나 마련하여 장애인권리협약 제 33조 2항에 명시한 대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감독하길 독려합니다.

데이터 수집

전반적으로 장애 유형별 데이터나 통계 자료가 부족합니다만, 2008년 인구 조사에 장애 관련 질문이 처음으로 포함되었고, 2014년 조선 장애자보호연맹이 중앙통계국과 합동으로 네 개 도에서 장애 표본 조사(Disability Sample Survey)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앙통계국은 사회경제, 인구 및 보건 조사(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DHS)를 유엔인구기금의 지원 하에 2014년 실시했습니다. 해당 사회경제, 인구 및 보건 조사는 연장자 이동 장애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2018년로 예정된 인구 조사에서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 질문 모두를 포함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올해 말 다중 지표 클러스터 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MICS)를 실시할 예정이며, 다중 지표 클러스터 조사에 아동 기능 관련 유니세프-워싱턴그룹 모듈을 포함하는데, 전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장애 유형별로 나눌 수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향후 데이터 수집 시에도 워싱턴 그룹 방법론을 적용하길 독려합니다.

물리적 접근성 및 정보, 커뮤니케이션 접근성

방북 동안 본 바로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인프라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2015년 지어진 과학기술전당, 올해 2월 전체 개보수가 된 평양초등학교 같은 신규 공공 시설도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환경적인 제약 뿐 아니라, 신체 장애가 있는 이들을 위한 휠체어, 의수, 정형술 등 보조 기구가 부재하여 사회 및 지역 활동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양 거주 장애인은 무상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건설감독성이 접근성 관련 규제를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는 접근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 표준과 관련하여 기술 지원을 요청하였고, 저는 기술 지원 제공에 동의하였습니다.

정보 접근성 및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2003년부터 자국어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조선손말통역원협회가 있으며 청각 장애인이 무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며,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수사 및 재판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을 요구하는 조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전당에 방문했을 시 청각 장애인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수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청각 자료, 점자 키보드 등을 갖춘 열람실(e-reading)을 방문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용 점자 문서 출판을 담당하는 광명 출판사가 운영되며, 시각 장애인에게

⁷ Centr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⁸ Ministry of City Management

통화료를 절감하는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치에 더하여 장애인이 정보 접근과 커뮤니케이션을 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인

2013년에 장애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장애를 달리 인식하도록 강조했지만, 이번 방북 기간에 살핀 바에 따르면 장애를 여전히 의료적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장애인을 인지하고 대할 때 이런 관점이 기저에 깔려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치유”한다거나 “회복”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정부가 대중 인식을 개선하길 권고합니다. 장애인을 향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에 대응하고, 장애인을 지칭할 때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제정신인”, “건강한” 사람 혹은 “정상인”이라 부르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나이와 무관하게 노출하기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과 여아가 사회 참여를 쉬이 하지 못하며, 이는 장애를 수치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방북 동안 살핀 바에 따르면, 국가가 청각 및 시각 장애인 관련 조치에만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 한 명과만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폐 아동 및 지적 장애 아동, (연골 형성 부전증 등) 왜소증을 앓고 있는 아동 등과 마주치긴 했습니다만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사정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심리사회적 장애, 다중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이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이 특히 예술이나 스포츠 부문에서 장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 고취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환영하며,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이러한 인식 고취 프로그램을 확대하길 독려합니다.

장애인의 참여 기회 제공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이 전국, 도 및 군 단위로 장애 여성 연합 등 장애인 연합을 조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이 장애인 연합간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통일협회 및 조선맹인협회 대표자의 내각 산하 장애인보호중앙위원회 참여도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의사 결정 과정에 여러 장애인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왜소증, 신체, 지적, 신체 발달, 심리사회 및 다중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연합 설립을 추진하고 지원하길 촉구합니다. 기존 연합이 이들 장애인은 대변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최고인민회의의 등 공적 자리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식 및 재생산 보건 및 권리 등 장애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모두에 반드시 장애 여성이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민 모두에게 취학 전 교육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무상 의무 교육을 제공하기로 2012년 결정하였고, 이로써 의무 교육 기간이 11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 아동도 무상 의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각 장애인 특수 학교가 세 곳, 청각 장애인 특수 학교가 여덟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아동은 일반 학교에 다니나, 접근성이나 적절한 시설이 부재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각 장애인이 교육을 받아 청각 장애인 특수 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데, 매우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중증 지적 장애, 자폐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등을 앓는 아이들은 장애아동회복원⁹에서만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회복원은 개별 아동별로 교육 과정을 조정하는 등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교실 내 [장애 아동용] 시설이 부재합니다. 장애 아동에게 동등하게 양질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중 장애나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교육 접근성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⁹ Korean Rehabilitation Centr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일반 학교에 장애 아동이 다니게 되면 동등하게 교육을 받는 데 여러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접근성을 보장하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 더불어 보조 장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등 교육을 마치면 장애인을 위한 직업 교육이나 원격 교육 등 여러 교육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의 대학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양질의 포용적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전국에 점진적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이들이 동등하게 교육 접근성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길 권고합니다.

보건 및 사회 보장 권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국가가 장애인을 포함하여 주민에게 생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공자입니다. 사회 보장 제도는 보편적 무상 의료 제공, 전액 유급 출산 휴가 240 일 보장, 기본 의식주 보장 등입니다.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에, 보건성도 인정하였듯이 의료 기기와 필수약품을 포함하여 의약품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인에 연금과 워크샵 등 특별 혜택을 보장하며, 특히 장애를 입은 “영예 군인”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애 등급 평가 및 판정 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방북 동안 평양 내 현대적 시설과 기술 장비를 갖춘 장애 아동 전용 병원 한 곳과 회복원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옥류아동병원이 원격 진료를 통해 전국 11 개 도 병원과 연결되는데, 모범사례로 생각합니다. 또한 문수회복원도 시설 활용도 모범사례입니다. 제가 방문한 병원과 회복원을 기준으로 삼아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같은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 여성이 성 및 재생산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장애 여성이 가족 계획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소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조선장애자보호령이 아닌 보건성의 소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보건성에 따르면 왜소증을 앓고 있는 이들을 등록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왜소증을 앓고 있는 이들의 신장을 키우는 치료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별보고관 위임권한에서 정신 건강 사안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나, 관련하여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어서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 및 사회 보장 부문에서 성과가 있습니다만, 여러 혜택과 서비스의 실질적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왜소증을 앓고 있는 이들, 지적, 발달, 심리사회, 다중 및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지역 사회 내에서 장애 유형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토록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에 있는 장애인 모두가 독립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자율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양초등학교는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의 지원이 없는 고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거주 기반 진료 시설에서 탈피하여 가족 중심, 지역 사회 중심 보육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제 20 조 및 제 23 조와 장애인권리협약 제 7 조에 의거하여 양육위탁, 입양가정 등 가족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고, 주로 경노동에 종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을 사회에서 소외할 때, 장애인과 그 가족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leaving no one behind)” 지속가능개발계획(SDG)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포용하도록 독려하고, 국가 전략, 정책 및 제도도 장애인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능력

법적 능력을 동등하게 향유하는 데 있어, 개정된 장애인보호법 50 조에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조항은 장애인이 후견인을 두도록 하며, 장애로 법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들과 미성년자만 후견인을 두도록 한정하는 가족법 제 40, 41 조와 민사소송법 제 49 조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이 후견인을 두도록 법제화하는 조항은 장애인권리협약 제 12 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지식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길 권고합니다.

유엔 시스템 및 국제 협력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유엔 기관 및 국제 협력 단체가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시스템, 특히 유엔 상주조정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된 외교관 및 국제 협력 행위자가 사업을 진행할 때 장애인을 항상 고려하고,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도주의 전략과 사업에서 장애 문제를 주류화하길 독려합니다. 더불어 유엔 차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지속가능개발계획 이행을 지원할 때 장애인권리를 범분야적으로 고려하여,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 방문 요청을 수용해 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장애인 처우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욱 노력할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국가 방문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장애인 인권 증진과 보호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관계 당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점차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유엔 시스템, 그리고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도 이를 기회로 삼아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해당국 정부가 장애인 인권에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금번 국가 방문과 제 보고서가 도움이 되길, 아울러 이 년 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첫 번째 국가 보고서 준비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금번 국가 방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장애인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또한 희망합니다

- 원문 확인 :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610&LangID=E#sthash.dAVWVjz0.dpuf>